

II. 국제보험회계의 주요 내용

1. 제정취지 및 배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997년 “국제보험회계 프로젝트”를 채택하여 국가간,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보험회계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나라별 이견들이 있었으며, 특히 미국이 IASB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확정적인 기준안을 도출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2002년 3월에는 IASB에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단계적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중 1단계로 Phase I 이라고 불리는 국제재무보고기준서(IFRS 4)가 2004년 3월 작업이 완료되어 공표되었다. 동 IFRS 4는 2005년부터 EU 국가의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정²⁾되었으며, 호주는 자국의 보험감독법규에 반영하는 등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7월 EU의 금융증권감독기구(CESR;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는 미국, 일본, 캐나다에 각국 기준을 IFRS와 합치하도록 요구하는 등 IASB가 정한 보험회계에 관련한 기준서는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장기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통한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유용성 강화 등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으로 향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가 주목하고 대비하여야 할 부분이다.

2) 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는 EU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U기업의 숫자는 28개국에서 8,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IFRS 4의 주요 내용 및 PhaseⅡ의 방향성을 선진 외국의 보험부채시가평가제도를 토대로 비교·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IASB의 보험회계관련기준서 제정경과 및 주요 내용

가. IFRS의 제정 경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은 국제자본시장의 고속성장에 따른 국가간 통일된 기업회계기준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1995년 국제증권감독자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IOSCO)가 IASB의 전신인 IASC³⁾에게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및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IASC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해 3년간 회계기준의 재정비 과정을 통해 핵심 회계기준들을 제시하여 국제회계기준의 틀을 정비하였다. 특히 1997년에는 IASC 보험실무위원회(Insurance Steering Committee)에서 보험계약 이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998년말 기준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 Recognition and Measurement)를 완성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보험현안보고서인 Issue paper on Insurance를 발간하였으며, 2001년 11월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 초안인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of Insurance Contracts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그 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1, 2단계에 걸쳐 보험회계 기준서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단계로

3) 기존의 IASC는 비상임위원회체로 운영이 되었으나 2001년 4월 상임위원 1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명칭이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로 변경되었다.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 IFRS 4)을 2004년 3월 제정 발표하였다. 최초의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 4는 2005년 1월부터 EU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EU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⁴⁾,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에도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수용했거나 할 예정이다⁵⁾.

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한 IASB의 시각에 대한 Discussion Paper가 2007년 1/4 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며, 국제보험회계기준 초안서의 공개는 2008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후 공개된 기준서 초안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및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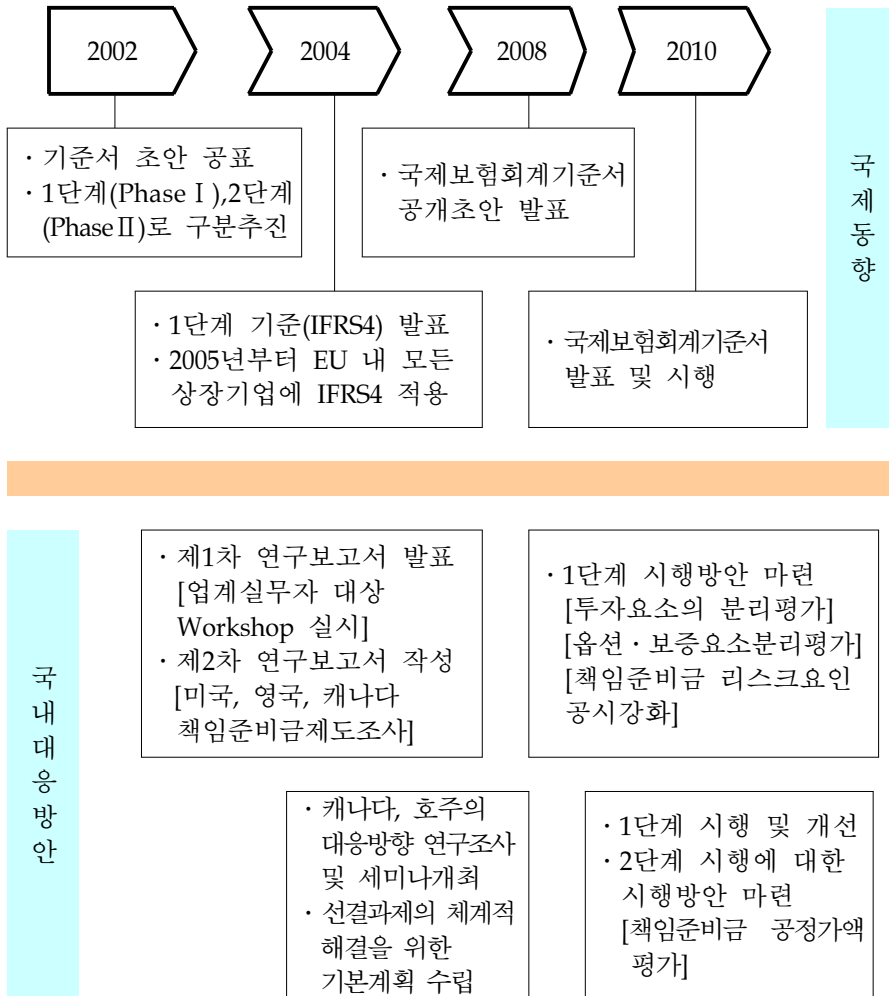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보험회계기준서 제정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의 계리업무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국제보험회계와 관련되어 이미 2004년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작업반이 진행되었으며, 제1차 작업반의 경우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및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국제동향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내용을 가지고 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작업반에서는 국제보험회계 및 미국, 영국, 캐나다의 책임준비금제도를 연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06년에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3차 작업반을 구성하여 캐나다 및 호주의 IFRS 4

4) 2007년부터는 미국재무회계기준인 US GAAP을 사용하는 기업과 채권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5) 호주의 경우 2005년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완전 수용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의 복수 대안 중 일부 삭제 또는 추가 공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공개기업은 향후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수용할 예정이고, 비공개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조사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2006년 9월 현재 약 100여 개국이 그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IFRS 사용을 동시 허용, 강제 적용 혹은 일부 수용하고 있다.

에 발표에 따른 대응 및 보험회계에 대한 감독체제를 조사 중에 있으며, 각 나라별 보험부채평가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림 II-1>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 국제동향 및 국내대응



<표 II-1> IFRS 4 진행경과

기간	주요내용
1997 IASC Insurance Steering Committee ⁶⁾	- 보험계약 Issue에 대한 논의시작
1998 : IAS39, IAS32	- IAS39(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 IAS32(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등 승인
1999. 12	- 보험현안보고서 발표 (Issue paper on Insurance)
2001. 11 : DSOP	-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of Insurance Contracts 공개
2002. 5	- Two phase Approach (Phase I, II)
2003. 5	- Exposure Drafts 5 (ED5) 공개
2004. 3	- IFRS4 완료, Completing Phase 1
2004. 9	- PhaseII 논의 시작
2005. 1	- EU내 모든 상장기업에 IFRS 4적용 의무화
2007. 3(예정)	- PhaseII에 대한 Discussion Paper 공표
2008(예정)	- Exposure Drafts 발표는 18개월 소요예상
2009(예정)	- Final Standard 12개월 소요 예상
2010(예정)	- 국제보험회계기준서 발표 및 시행

나. IFRS 4의 목차

국제회계기준 중 보험계약과 관련된 국제재무보고기준인 IFRS 4는 서론과 45개의 조항과 3개의 부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표 II-2>에

6) Insurance Advisory Committee 가 설립되면서 해체되었다.(2000년)

제시된 모든 조항들은 서로 동일한 위치 및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굵게 표시된 부분이 주요한 원칙이다. 이탤릭체로 표시된 용어들은 IFRS 4에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부록 A에 정의되어 있으며, 나머지 다른 용어들은 이미 국제회계보고기준에 정의되어 있다.

서론에는 IFRS 4가 보험 계약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회계보고기준으로서 보험계약을 다루는 회계가 다른 분야의 회계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업계가 2005년 IFRS의 적용을 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향후 보험계약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2단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제한적인 개선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IFRS 4는 보험계약 프로젝트의 2단계를 위한 시금석임을 선언하고 있다.

제1조는 IFRS 4에 대한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12조까지는 IFRS 4의 범위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13조에서 35조까지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36조에서 39조까지는 공시에 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40조에서 45조까지는 시행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용어의 정의(Defined Terms), 보험계약의 정의(Defini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기타 IFRS의 수정(Amendments to other IFRSs)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외에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4 insurance contracts)⁷⁾, 실무이행지침(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4 insurance contracts) 등을 정리하고 있다.

7)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에서는 IFRS 4가 제정되는 과정 중에서 이슈화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견 등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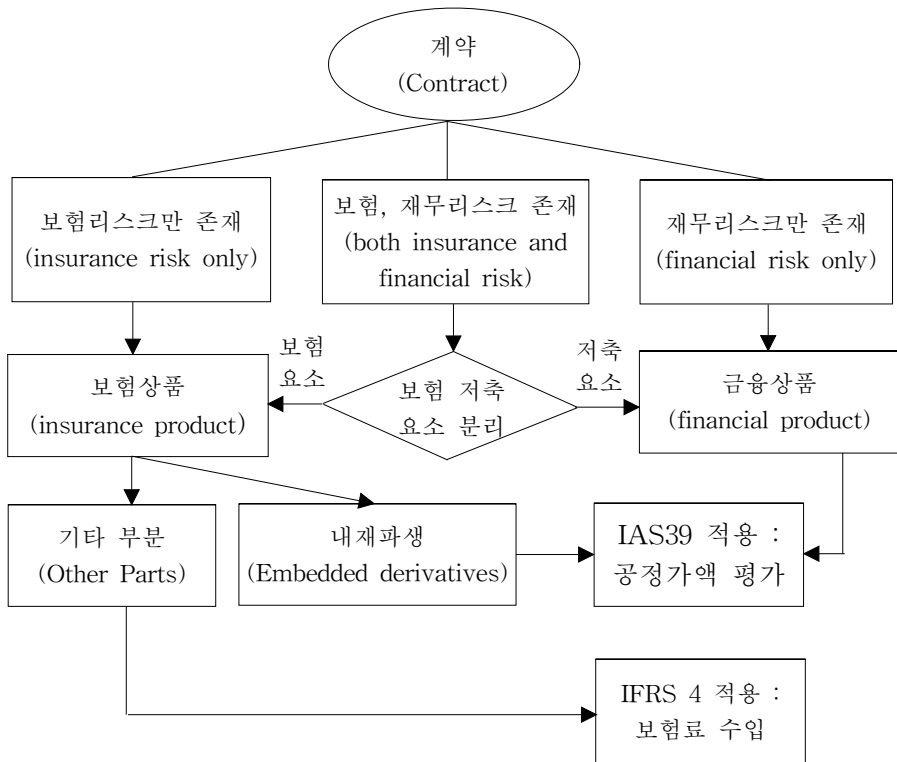
<표 II-2> IFRS 4 목차

목차	조항
서 론	IN 1 - IN 13
목 적	1
범 위	2-12
내재파생상품	7-9
저축요소의 분리	10-12
인식 및 측정	13-35
기타 IFRS조항에 대한 일시면책	13-20
부채적정성 테스트	15-19
재보험자산의 감액	20
회계기준의 변경	21-30
현행시장금리	24
기존 관행의 유지	25
신중성	26
미래투자수익	27-29
새도우 어카운팅	30
기업합병 또는 포트폴리오 이전으로 인수된 보험	31-33
임의배당요소	34-35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34
금융상품의 임의배당요소	35
공 시	36-39
인식금액에 대한 설명	36-37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38-39
효력발효일 및 경과조항	40-45
공 시	42-44
금융자산의 재분류	45
부 록	
A - 용어정리	
B - 보험계약의 정의	
C - 기타 IFRS의 수정	
결론도출근거	
실무이행지침	

다. IFRS 4에 의한 회계처리 흐름

IFRS 4에 의한 회계처리는 우선 해당 계약의 성격이 보험 리스크만 있는지, 아니면 재무 리스크만 있는지 또는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재무 리스크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한 후 IAS 39를 적용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림 II - 2> IFRS 4에 의한 회계처리 흐름도



자료 : Trowbridge Deloitte, Asia prophet users group meeting 2004.

반대로 보험 리스크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보고 내재파생상품과 기타 부분으로 분리를 하여 내재파생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기타 부분은 IFRS 4 를 적용하여 보험료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보험 리스크와 재무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로 분리하여 보험 요소는 보험 리스크에 준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저축요소는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IAS 39를 적용하여 공정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3. 1단계 작업의 주요 내용

1단계는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위한 사전적 경과조치로서 시가평가기준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우선 대상 계약 구분, 최선 추정원칙, 미래현금흐름 분석 및 공시 등 시가평가를 위한 기본적 바탕의 정립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가. 보험계약 중심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 및 공시가 실체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기존의 보험자 중심의 회계에서 보험계약 중심의 회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보험계약에만 적용되고 IAS 39(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의 범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험계약(A)은 물론 보험회사가 아닌 일반기업들의 보험관련거래(B)도 보험회계기준의 대상범위로 하지만, 반대로 보험회사의 일반거래(C)는 보험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표 II-3>참조).

<표 II-3>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적용범위

구 분	보험회사	비보험회사
보험계약	A	B
비보험계약	C	-

주 : IASB의 보험관련 회계기준서는 보험거래(A, B)의 특수성만을 반영한 회계 기준이고, 가격위험만을 갖는 파생상품이나 재무위험만을 지니는 금융자산 및 부채(C)는 일반기업의 회계처리와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IAS 39(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를 적용함.

나. 계약내용의 요소별 분리 평가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리를 통해 보험리스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계약으로 한정하여 투자계약과 구분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인 금융재보험 등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여 일반회계기준 중 금융상품 평가기준인 IAS 39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옵션 및 보증 등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로 인해 무진단 계약전환과 같은 옵션 및 보증과 같은 내재파생상품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주보험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일례로 해약 옵션은 원칙적으로 분리제외 대상이지만 해약 옵션의 가치가 주거나 물가와 같은 재무변수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하여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저축요소와 보험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요소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수입보험료를 저축요소와 위험요소로 분리하여 저축요소는 IAS 39에 의한 투자계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채로 계상한 후 시가로 평가한다. 즉, 수입보험료 중 보험요소만 보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저축요소는 은행의 예수금과 동일하게 단순

한 일반 부채의 증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축요소 및 위험요소의 신뢰성 있는 분리 측정이 실무상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최선 추정 채택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평가시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등 예정기초율에 적용하는 안전할증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는 평균적 위험률에 위험률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안전할증을 추가하여 보수적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미래의 보험금 등 지급금의 예상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고 예상 지출액의 총액으로 지급준비금 등을 산출하는 미할인 평가방식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 중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포함한 지급준비금도 동일하게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거대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평준화준비금(Equalization Provision)은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 준비금을 자본항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라. 책임준비금 평가에 대한 공시수준의 양적·질적 향상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정보이용자가 경영진의 시각에서 보험회사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금액과 손익·자본의 보험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양적·질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과거 책임준비금 평가의 적정

성 등에 대한 투명성과 보험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표 II-4> IFRS 4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축요소의 분리 (Unbundling of deposit components)	- 보험계약요소(투자/보험) 분리 (저축요소에 대하여는 IAS39 적용)
내재파생상품 (Embedded derivatives)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평가(내재파생 상품에 대하여도 IAS39 적용)
공시(Disclosure)	- 공시수준의 질적·양적 향상
IFRS 4 결론도출근거 중 할인	- 미할인방식의 평가방식 사용 금지 - 보수적 책임준비금 계상 금지 (준비금평가시 기초율적용에 안전 할증 사용금지)
IFRS 4 결론도출근거 중 비상위험준비금,평준화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불인정

4. 2단계 작업의 주요 내용

2단계(Phase II)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공신력 있는 시장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단계의 제정 방향은 IFRS 4 결론도출근거 중 “2단계에 대한 잠정적 결론”(Tentative conclusions for phase II)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제시한 2단계의 방향성은 미래현금흐름방식의 자산부채평가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

적 권리와 의무를 직접 식별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자산부채 평가법(asset-and-liability approach)이 되어야 하고, ②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액(fair value)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③ 신계약비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2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향후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① 측정모델은 보험계약의 개별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 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측정방법에 대한 것이다.

가.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한 시가평가

보험금 지급채무인 책임준비금의 시장가격은 재보험 출·수재시의 재보험료, 기업인수·합병시 보험계약의 인수가격 등 부분적, 예외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책임준비금에 대해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준비금의 시가를 추정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방법의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할 현금의 유출과 유입액을 모두 감안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의 대체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할인이자율은 미래현금흐름에 리스크를 반영할 경우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입장이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고위험자산을 보유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오히려 작아지는 역선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자산투자수익률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나. 최선추정의 변동위험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

책임준비금이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에 의해 결정되어도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변동에 의한 추정치의 변동위험은 상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미래현금흐름의 최선 추정치 변동위험을 보험계약의 판매와 동시에 부담하게 되므로 보험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추가적인 마진은 추정치의 변동위험이 존재하는 한 책임준비금의 항목으로 최선추정치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더하여 추가로 적립되어 최선추정치의 변동위험에 대비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액은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에 의해 평가된 금액과 최선추정치의 변동위험에 대비한 시장가치마진(Market Valuation Margin; MVM)으로 구성된다.

다. 책임준비금 증감에 의한 당기손익 측정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서는 보험계약 관련 손익이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크게 두 부분에서 발생하게 된다. 우선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예정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최선추정치의 변동과 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정치의 변동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선추정치의 변동위험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해 추정치의 변동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한 시장가치마진의 감소액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간·기간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손익조작의 개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가치마진 측정기준을 객관화·정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가치마진은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 변동과 관련하여 매기간별 잔존위험의 측정수준에 따라 기간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정보에 대한 충분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라. 신계약비의 당기비용 처리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손익의 안정적 평가를 위해 보험경영의 특수성에 따라 보험기간 초기에 지출된 신계약비를 이연한 후 점진적으로 상각시키는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제도는 불인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수단인 현금흐름할인법에서는 신계약비 지출을 즉시 전액 당기비용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국내보험회계기준 및 보험관행과의 비교

가. 국내보험회계기준과의 비교

국내보험회계기준과 향후 도입이 예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보험회계의 적용대상, 보험부채의 평가, 보험료의 수익과 부채의 인식,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미지급보험금, 신계약비, 보험료결손의 회계처리에 있다. 보험회계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국내보험회계기준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및 일반 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보험사의 보험계약과 일반 기업의 보험관련 거래를 보험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 수익과 부채 인식에 있어서 국내보험회계기준은 이연매칭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판매시점에 인식하게 된다.

<표 II-5> 국제보험 회계기준과의 비교

구분	국내보험회계기준	국제보험회계기준
보험회계 적용대상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및 일반거래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 일반기업의 보험관련 거래
보험부채 평가	- 현재가치를 이용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측정(생명보험)	-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 손해보험까지 현재가치 평가 확대
보험료 수익, 부채인식	- 이연매칭법 -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인식 - 미지급보험금, 미경과보험료, 보험금결손준비금 인식	- 자산부채법 - 판매시점에서 인식 - 미소멸리스크 준비금 인식
보험료 적립금	- 전진법, 소급법도 인정 - 예상보험료는 순보험료 이용 - 초기 기초율을 계속 적용	- 전진법 - 예상보험료는 영업보험료 이용 - 매기 기초율을 갱신 추정
미경과 보험료	-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비용 인식	- 미소멸리스크준비금에 포함
미지급보험금	- 지급준비금과 보험금 미지급금으로 구분하여 계상 - 사고처리비용은 가산하고 구상권 등 회수가능금액은 차감	- 보고된 발생 손해액, 미보고된 발생 손해액, 사고처리비용 포함 - 잔존물 처분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정회수금액은 차감 - 미소멸리스크준비금에 포함
신계약비	- 계약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 - 1년 이하 단기보험계약은 전액 당기비용 처리	- 장단기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 당기비용 인식
보험료 결손	- 예정이율이 장기이자율보다 높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식	- 부채를 매기 재추정하므로 별도 손실인식이 불필요 - 미소멸리스크준비금에 포함

보험료적립금과 관련하여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전진법과 소급법을 모두 인정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전진법만을 인정한다. 예상보험료 산출에 있어서도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순보험료를 사용하여 산출하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영업보험료를 사용한다. 또한 초기 기초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보험료적립금을 평가하는 국내 보험회계기준과는 달리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매기 기초율을 새롭게 추정하여 사용하게 된

다. 즉, 현재의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초기 기초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발행연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매 기간 새로 기초율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평가연도법을 사용하게 된다.

신계약비의 경우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장기는 계약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하고, 단기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장단기 구분없이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예정이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높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보험료결손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를 매기 해당 시점의 기초율로 새롭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실 인식이 불필요하게 된다.

나. 기존 보험관행과의 비교

국제보험회계기준과 기존 보험관행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목적, 보험부채의 측정, 자산·부채 측정의 연계, 금융자산의 측정, 기초율에 대한 가정, 사용하는 기초율, 고려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 이자율 등 시장 기초율, 사망률 등 비시장기초율, 부채평가시 신용등급의 반영, 신계약비, 현재가치 적용, 할인율 등이 있다.

기존 보험관행에 있어서의 목적은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대응시킨 적절한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통해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기존 보험관행은 보험부채의 측정에 있어 통상적으로 과거의 거래 누적으로 측정을 하고 미래현금흐름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시에만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 II-6> 기존 보험관행과의 비교

구분	기존보험관행(이연매칭법)	국제보험회계기준(자산부채법)
목적	-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대응	- 보험계약 자체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
보험부채측정	- 통상 과거의 거래 누적 - 미래현금흐름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시에만 추정이 원칙	-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 미래현금흐름을 매기마다 추정
자산-부채 측정 연계	- 실무상 혼합되어 있고 투자형 생명보험계약은 연계	- 투자형 생명보험계약만 연계
금융자산측정	- 공정가치와 원가기준 혼용	- 공정가치 측정이 대전제
기초율에 대한 가정	- 장기추세에 암묵적 반영 - 감독규정 고려 - 현재의 최선추정치	-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미래사건의 최선 추정치
사용기초율	- 보험사 자체 기초율	- 시장기초율로서 실제 포트폴리오 특성에 근거
고려대상 현금흐름	- 정상적인 순차적인 청산을 가정할 경우	- 결산보고서일에 부채이전을 가산할 경우의 가격
이자율 등 시장기초율	- 실무상 다양함	- 현재 시장가격 및 다른 시장 추출 데이터와의 일관성 요구
사망률 등 비시장기초율	- 내부 추정치	- 내부추정치 사용하나 시장 참가자들의 일관성 요구
부채평가시 신용등급반영	- 보험료에 암묵적으로 반영	- 개념적으로 반영
신계약비	- 일반적으로 이연	- 당기비용 처리
현재가치적용	- 생명보험에만 적용	- 생존보 모두 적용
할인률	- 실제 또는 명목상 자산의 장기예상수익에 근거하여 추정	- 무위험이자율 : 현금흐름에 리스크 반영시 - 위험조정이자율 : 현금흐름에 리스크 미반영시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은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로 측정을 하

고, 미래현금흐름을 매기마다 새로 추정을 하게 된다.

기초율의 가정에 있어서도 기존 보험관행은 장기추세에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감독규정을 고려하여 현재의 최선추정치를 사용하는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에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미래사건의 최선추정치를 사용하게 된다.

6. 책임준비금 평가방법 비교

가. 발행연도법

발행연도법에서는 손해액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에 결정된 기초율을 이용하고 이러한 가정들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방식은 보험부채를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기초율과 할인율이 초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진법(prospective measurement)은 계약활동의 합계로서 이루어진 소급법(retrospective measurement)과 동일하게 된다. 이 방법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화는 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신계약비를 비롯한 회수 가능한 취득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되며,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상각하게 된다. 또한 초기에는 수익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로 인해 초기 부채 측정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마진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마진은 보험사에 대해서 리스크를 부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어지게 되며 보험사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식하게 된다.

초기 손실은 부채 적정성 평가에서 계약이 전반적인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식하게 된다. 반면 발행 연도의 불편 추

정치를 이용하며 부채 적정성 평가에서 추가적인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면 부채는 변하지 않게 된다.

현가 계산시에는 무위험 할인율을 이용하게 되고, 각 보고일에는 부채적정성 검증을 필요로 하며, 계약의 신용특성(credit characteristics)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 측정시에는 자산의 유형에 따른 각 IAS 및 IFRS의 평가기준을 이용하게 되며, 부채가 “손익을 통한 공정가치”로 평가될 때까지는 IAS 39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되며, 경제적 특성과 내재파생상품의 리스크가 주계약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된다.

신계약비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시작하고 판매하며 언더라이팅할 때 보험사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회계처리 방법으로는 (a) 특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b) 비용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험사의 초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c) 유입가치(entry value) 성격의 초기 보험료로 간주하여 보험부채를 그 진입가치가 차감된 시장가치로 측정하거나, (d)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대해 Insurance Working Group(이하 IWG)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이연신계약비(deferred acquisition cost)에 해당되는 항목은 원가 이연 보다는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계약권리로 보아야 하며,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권리를 회수가능한 취득원가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계약 권리가 초기에 비용으로 측정된다면 비용은 증분원가(incremental cost)의 성격으로 증분원가는 중개사에 대한 수수료처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갖지 못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의 상각은 임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회수가능한 취득원가는 계약권리로 보아 분리된 자산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회수가능한 취득원가를 상각하는 방식은 보험료 요소의 금액이나 순이익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연도법에서 부채의 적정성 검증은 보험부채의 장부상 금액과 미래 현금흐름의 갱신된 추정치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비교를 통

해 손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정치와 할인율을 갱신하여 현재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을 하며, 수정된 기초율과 이자율은 만기시까지 변화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며, 손해액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나. 현행유입가치법

현행유입가치법은 보험사 부채를 보험사가 현재의 계약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계약을 취득, 즉 유입할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약속을 해야 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 방법의 특징은 (a) 보험부채를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을 하고, (b) 주계약과 내재 파생상품을 분리하며, (c) 원가를 회수할 현금흐름은 부채의 감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취득원가를 분리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d) 초기 수익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부채의 초기 측정치는 명목적·암목적 마진을 포함하게 된다.

초기에 마진은 회수 가능한 취득원가보다 작게 부과된 실제 보험료로 계산되며, 보험사가 계약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1)리스크의 양과 (2) 리스크당 단위 가격에 대한 추정치가 변화될 때 마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각 보고일마다 갱신된 현재의 불변추정치를 사용하며, 할인율은 현재의 무위험 시장 할인율을 사용하게 된다. 만일 추정치와 할인율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은 필요하지 않고, 계약의 신용특성은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다. 현행유출가치법

현행유출가치법은 보험부채 측정을 현재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다른 실체에게 이전, 즉 유출될 경우 다른 실체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부채는 유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추정을 통해 측정되게 된다. 이러한 현행유출가치법은 현행유입가치법과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현행유출가치법은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다. 이는 전체 계약에 대한 유출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손익으로 인식되고 전체 계약이 현재의 청산 가격, 즉 유출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유입가치법은 현재의 현행유입가치가 현재의 현행유출가치와 밀접한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는다.

현행유출가치법은 리스크와 이익에 대해 추정된 시장가치가 보험료에서 명목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내재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험사가 결론을 내릴 경우 초기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관찰 가능한 시장 데이터가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손익을 인식하는 데 일부 제약이 따르게 되며, IAS 39는 이러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동일한 경우 손실은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행유입가치법은 초기 수익에 대한 인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현행유출가치법은 현행유입가치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과 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준해서 수입을 인식한다. 이 방법에서 초기 이후의 마진은 시장참여자가 잔존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부채와 권리 및 이와 관계된 리스크에 대해서 요구하는 마진의 불편 추정치이다. 시장 참여자가 요구하는 마진의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 시간에 따라 마진은 변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의 초기 마진은 보험계약자와의 거래가격으로 계산된다. 즉, 현행유입가치법은 시간에 따른 리스크의 양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리스크 단

위당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현행유출가치법은 명시적으로 부채의 신용특성을 반영하는 반면, 현행유입가치법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거나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다. 현행유출가치법은 부채적정성 검증을 포함하지 않으나 현행유입가치법에서는 이러한 검증이 초기에 필요하다.

라. 현재가치 방법 선정에 대한 논란

현재 IASB에서는 부채 평가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두 가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유입가치법은 초기에 관찰 가능한 시장 가격의 계산이 가능하지만 현행유출가치법의 마진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기에 추정을 해야 한다. 이는 주관성, 비용과 변동성을 발생시키며, 현행유출가치법은 과거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실제 현금흐름은 초기에 추정된 마진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이는 마진이 표준편차의 수와 같은 리스크의 양과 표준편차당 가격과 같은 리스크 단위당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년간의 실제 경험치는 리스크 양의 신뢰성 있는 추정은 가능하게 하나 리스크 단위당 가격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보여줄 수는 없다.

또한 현행유입가치법과는 달리 현행유출가치법은 초기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데, 초기 수익 인식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계약 초기에 보험계약자에게 효용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며, 경영진이나 언더라이팅 관리자들에게 과도하게 낙관적인 추정치를 만들게 하는 유인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게다가 신뢰성이 결여된 리스크 확인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이 가장 적은 부채와 가장 많은 이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동일한 상품에 대해 관찰 가능한 현재 시장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법과 비교할 때 금융상품에 있어서 공

정가치의 초기 인식에 대한 최선의 증거는 거래가격이라는 IAS 39의 언급과 불일치하게 된다. 또한, FASB에서 연구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한 접근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기업 대 소비자' 접근법과도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행유출가치법은 IASB와 FASB가 이전에 연구한 '기업 대 기업' 측정방식과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행유출가치법의 장점으로는 IAS 37에서의 준비금의 취급과 일치하게 되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현재의 현행유입가치가 공정가치와 유사한 내재파생상품의 측정치와 결합된다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는 현행유입가치법에서도 불필요하게 된다. 현행유입가치법과는 달리, 현행유출가치법에서는 초기에 분리된 부채의 적정성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표 II-7> 부채 평가 방법별 비교

	발행연도법	현행유입가치법	현행유출가치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 가능여부	예 (가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결과는 과거법과 동일)	예	예
내재파생상품 분리 의무	예	논란이 있으나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신계약비	이연되어 이익의 인식과 함께 상각됨 분리된 자산이나 준비금의 차감항목으로 나타남	이연되지 않음	이연되지 않음
초기 이익 인식 여부	아니오	아니오	개념적으로는 예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있음
초기 손실 인식 여부	예 신계약비가 이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인식검증을 통해 인식	일반적으로 아니며, 손실인식검증을 통해 결정됨	개념적으로는 예
위험과 이익에 대한 마진	초기 측정시 내재됨 체계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시간경과에 따라 인식	초기 측정시 내재됨 체계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시간경과에 따라 인식	각각의 보고일에 명확화 됨 보고일과 보고일간 명백한 마진간의 차이를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
추정	편차(bias) 없음 손실이 인식되지 않으면 lock in	편차(bias) 없음 현행	편이(bias) 없음 현행
할인율	무위험이자율 시장이자율 손실이 인식되지 않으면 lock in	무위험이자율 시장이자율 현행	무위험이자율 시장이자율 현행
적정성 검증	예	초기 : 예 위험마진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결정 나중 :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준비금내 신용위험 포함 여부	초기 내재되어 있음 초기 마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통해 해결됨	초기 내재되어 있음 초기 마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통해 해결됨	초기에 명확함